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제2877호
----------	--------

제출년월일 2021. 10. 08.
제출자 김포시장

1. 심사경과

- 본 안건은 2021년 10월 0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출자)대상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 출자·출연의 필요성
 -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편성으로 기업경영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자·출연 주요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자금 부족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금 채원으로 융자 지원, 대출금리의 일부 이자 보전
 - 주요사업 : 중소기업 융자 지원
 - ▶ 운전자금 : 인건비, 자재구입, 제품생산 등 기업 운영 자금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시설설비, 사업장 건축, 연구개발비 등
 - 지원한도
 - ▶ 운전자금 : 기업 당 5억 원 이내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기업 당 30억 원 이내
- ※ 경기도 출연금 요청액 : 485백만원(산출근거 : 최근 5년간 시·군별 지원액의 0.1%)

4. 검토의견

가. 배경 및 취지

- 본 안건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출연금을 편성을 위한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도 출연금 편성 전에 동의안으로 제출된 사안임.

나.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연하는 사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예수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 인건비 및 자재구입 등의 운영자금을 비롯하여 창업 및 시설설비 자금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어
 - 경기도의 출연요청액 485백만원에 대하여 예산 편성할 계획임※참고 : 작년 출연금 458백만원

다. 종합의견

-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